

木
20

27 28 29 30 31
가장 늦은 야행

기소장 초안 (I)

(2000.7.13)

2000년 일본군성노예 국제여성전범법정

한국측 검사단 (제출)

피고인: 일본천황 裕仁 외 다수, 일본정부

제1부 개인의 형사책임

I. 피고인 명단

II. 범죄사실

1. 일본군성노예/군위안부제도의 성립

× 2. 군위안부동원(강제연행)

3. 군위안소생활

4. 폐전과 귀국과정

5. 귀국 이후

III. 피해사실 (증언자료)

IV. 법 적용

1. 적용법의 문제

2. 국제법의 적용

3. 일본법

V. 결론

제1부 개인의 형사책임

I. 피고인 명단

II. 범죄사실

배경 - 식민지인 전쟁경과 - 전쟁 강행

1. 일본군성노예/군위안부제도의 성립

피고인들은 '군위안부' 제도를 (입안, 성립시차 뒤에 별도로 기소된 바와 같이) '위안소'를 설치, 운영하여 다수의 조선여성들을 '중군위안부'로 강제로 동원하고 성폭행, 강간, 고문, 감금,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 상해, 살인 등의 범죄행위의 피해

를 받은 다수의 여성

를 입게 하여 '성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2000년 일본군성노예진범 국제법정의 헌장 제2조 1항에 적시된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범죄, 집단학살죄를 저질렀다.

(1) 성립배경 — 양형아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1932년 상해사변으로 위안소가 설치되기 시작한 것을 기점으로 일본군위안부 제도가 성립되었다. (임시미, 54)

① 일본군의 직접 통제하에 종군하는 위안부를 통해 전쟁터의 군인에게 성적 위안을 제공하려는 이 제도는 일본의 제국주의 침탈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일본은 이미 1902년 러일전쟁 당시와 1918년 시베리아 출병 때부터 수많은 군인 위안용 여성들을 전지로 보냈다." 신혜숙·조혜란, 217; 林博史와 倉橋正直의 논문 등. [특히 시베리아 출병시(1918-1922)에는 성병 감염으로 인한 전력 약화에 대한 대책으로서, "당시에 출병한 일본군 7만5명에 위안부 2만명 동원계획이 있었다고 한다." 신·조, 219.] 4면

만주사변의 경우 "1931년 만주사변 때로부터 현주민 부녀 강간과 군대내 성병 만연으로 인한 병력 소모에 대한 대책으로 관동군은 부대 주변의 일본인 경영의 유곽을 허가하였는데, 요정은 장교용, 유곽은 병사용으로 구분했다고 한다. 일본인 매춘업자들이 만주에서 가까운 조선인 여성들을 여공모집의 명목하에 유녀로 모집하였으며, '만주의 女タコ部屋(낙지방이란 뜻)'이 관헌의 묵인하에 성행하였다고 한다." 신영숙·조혜란, 231.

② 일본군위안부 제도는 또한 일본의 근대화과정에서 확립된 매매춘에 대한 공식 정책과의 관련 속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일본은 "1872년 '전근대적'인 유곽(遊廓) 제도를 폐지하는 예창기해방령(藝娼妓解放令)을 발표하는 대신 이른바 대좌부업(貸座敷業)을 허용하여 '근대적'인 공창제도를 확립"하였다. 강만길, 18; 鈴木, 225. 그 후 "일본 정부는 매춘업 종사자에 대해 방관자 내지는 해외 매춘 여성의 진출에 오히려 협조적"이었다. 신·조, 219.

"일본의 경우 해외에 진출하는 남성을 위한 매춘부의 파견은 필수적이며 공공연한 일이 되었고, 이런 유례를 배경으로 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만주·중국 침략과 함께 군인들을 위한 집단적 성행위 장소로서 '위안소'가 생겼으며, 여기에 이른바 '군위안부'가 집단적으로 수용된 것이다." 강만길, 19.

③ 더욱이 "일본의 '천황제 군국주의 체제'는 천황과 국가를 위해서 국민은 모든 것을 희생하여 말 그대로 분골쇄신하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자, 국민된 도리로 강요당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당시의 일본 남자들이 군인으로 출정, 전사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충성심의 발로로 찬양되었고, 동시에 여성은 군인을 낳아주는 모성으로, 또는 군인을 위

로해주는 위안부로 그 역할이 규정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신·조, 221.

‘중군위안부’, ‘위안소’라는 이름은 패전 전의 일본 군부가 지은 것으로 “흔히 15년전쟁 시기에는 영어의 매춘부를 의미하는 p자에서 따온 ‘빠’로도 불리었는데 ‘천황의 군대 하사품’이라는 뜻을 가진다. 또한 “중국어의 빠는 여성의 성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찍이 만주지방의 일본 매춘부를 비롯, 위안부 여성을 흔히 빠로 불렀다.” 신·조, 224. 또한 당시 ‘정신대’라는 용어는 군위안부를 뜻하는 것으로 널리 받아들여졌다.1) 이러한 용어들은 실상을 가리고 왜곡함과 동시에 비속한 표현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으나 여전히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군의 성적 대상이 되었던 여성들을 ‘중군위안부’로 부르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을 통해서 성적 ‘위안’을 받은 일본 군인을 주체로 하여 붙인 명칭일 뿐”으로 “그 여성들의 경우 군인들에게 ‘위안’을 제공하는 행위는 대부분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고통중의 고통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명칭”이라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강만길, 11-12쪽.

(2) 정신대

1) 엄밀하게 ‘정신대’는 군위안부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후자를 포함하는 광의의 것이다. 윤정옥은 “그 발생원인을 기본적으로 식민지 조선의 지배를 위한 조선 여성의 지배에 기인하며, 더 나아가서는 민족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연결” “군에 동원된 위안부 여성” 신·조 223.

“식민지 조선에서 정신대란 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중일전쟁의 수렁에 빠진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태평양전쟁을 준비하던 1941년경인 것 같으며, 처음에는 농촌에서 전시체제를 강화하고 농민기 농촌노동력을 조직화하기 위해 만든 산업보국단을 가리킨 것 같다. 그러나 정신대조직은 농민을 대상으로 한 것뿐만 아니라 각계 각층으로 확대되어갔다. “증산운동정신대(增産運動挺身隊)로 1천만 학도의 원군(援軍) 소학생까지 근로보국”이라 한 것과 같이 학생의 근로보국단을 정신대라 하기도 했고, “부인농업정신대(婦人農業挺身隊)” 각 군서 선발하여 내지(內地) 농촌 견학”이라 한 것처럼 농촌의 남자 노동력조직뿐만 아니라 일본 농촌 견학을 위한 농촌 부인조직을 정신대로 부르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내선일체정신대(內鮮一體挺身隊)로 기술과 노력의 교류, 6백 산업전사를 내지에 파견”이라 한 것처럼 일종의 산업기술연수생을 정신대로 부르기도 했고, “의용봉공(義勇奉公)의 정신대, 경성부 근로보국단 훈련방침 결정”이라 하여 도시 청소년의 근로보국단을 정신대로 부르기도 했다. 또 “일의에 찬 근로보국정신대는 마침내 정연맹(町聯盟)을 단위로 결성을 보게 되었다”고 하여 일반 시민의 근로보국대를 정신대로 부르기도 했다. 심지어는 “식봉공(食奉公)의 정신대들, 내(來) 30일 경성식량보국대(京城食糧報國隊) 신(新) 발족”이라 한 것처럼 전시하의 식량대책을 위해 식량창고업자, 정미가공업자, 식량배급업자 등으로 조직된 이른바 식량보국대를 정신대로 부르기도 했다. 보국대란 말이 따로 있었지만, 이 경우 정신대와 보국대를 같은 뜻으로 썼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정신대란 말은 전시체제 아래서 일본 제국주의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특별히 노동력을 제공하는 조직 등을 지칭한 일반명사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태평양전쟁이 막바지로 접어드는 1943년 이후로 가게 되면 정신대란 말은 여자정신대 혹은 여자근로정신대에 한정해서 쓰이는 경향이 나타나다가 마침내 1944년에는 여자정신대근로령이 내려지게 된다. 이후부터 정신대란 말은 대체로 전쟁노동력으로 동원된 여자에 한해서 쓰인 것 같다.” 강만길, 13-14쪽.

1944년 중반 도야마(高山)현 후지코시(不二越) 비행기공장에 강제동원된 여자정신대가 조선에서 일본 등지로 동원된 최초의 여자근로정신대. 강만길, 15쪽.

군위안소가 하나의 군의 정책으로 본격적으로 확대된 것은 1937년 말 남경대학살 이후이다. 이때부터 위안소 설치는 급증하고 육군조직 속에 정착되었다. 신·조 222.2)

정책결정과정 첩보·지식

위안소 설치 동기와 목적은 일반적으로 “① 1937년 남경학살이 발발했을 때 침령지 여성에 대한 일본군의 강간 만행의 방지와 치안회복을 위함, ② 군인들에게 위안을 제공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킴, ③ 성병 방지를 위해 특히 조선의 미혼녀가 적합함, ④ 군의 기밀을 보호하고 스파이를 방지하기 위함....그밖에 군대의 독자적 자원 확보(정진성)”로 알려져있다. 신·조, 229.

군에 인건
통제하는 기관

일본정부의 자체보고서는 위안소 설치의 이유로 “위안소는 여러 곳에서 당시 군당국의 요청에 따라 세워졌다. 그 당시의 정부내부문서는 위안소설치의 이유로 당시 일본군에 의해 점령된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일본군인의 강간과 다른 불법행위의 결과로 끓어오르는 반일감정을 막을 필요, 성병과 기타 질병으로 인한 군전력의 손실을 막을 필요와 첩보행위를 방지할 필요를 들고 있다”고 하였다. UN Doc. E/CN.4/1996/137, p. 14; 맥두걸 보고서, 부록, para. 9 재인용.

그러나 이러한 위안소 설치 목적은 명목적이었을 따름이며 실제 “일본 군대의 경우 위안소를 두었다고 해서 현지민에 대한 군인들의 강간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고, 강간이 성행하는 한편 그들의 위안소 출입 또한 예사롭고 태연한 일이었던 것이다.” 강만길, 19. 위안부제도의 본래의 목적, 즉 성병, 강간 및 기타 혼란을 방지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증언으로는 희스, 311 참조.

← (3) 군위안부제도와 조선

“1938년 중일전쟁에는 대부대가 동원되면서, 현지 사령부는 일본인 매춘업자를 동원하는 한편, 조선총독부로 하여금 ‘군요원의 女’공출을 발주”하였다. 한편 조선의 독립운동 전개에 대응하기 위해 총독부는 ‘조선민족대책’을 수립하여 “조선인 청장년 남녀를 조선 밖으로 빼어내 병사와 하급노동자, 추업부 및 군대의 특수(要務)에 종사케 하는 등 ‘조선민족쇠망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일련의 정책이 적극 추진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후에 ‘군대요무’는 ‘군대위안부’로 이름 붙여지고, 일본군대 전속위안부”가 되었다. 신영숙·조혜란, 224.

2) 倉橋는 1932-1937 과도기적인 ‘변형된 공창제’의 형태로 등장” 倉橋는 초기매춘부형, 과도기의 변형된 매춘부, 성적 노예형으로 분류규정하고 본질은 강제적 수법에 의한 성노예라고 하고 더욱이 조선인 여성의 대부분은 성노예로 틀림없는 차별상이 있음을 역설. 신·조, 222.

식민사회의 총체적 강령
 '사냥'의 저항의 역안. → 강령 대항
 '총력' 등이 '수'가 되지 못함.

당시 조선에서 위안부의 대량동원을 가능하게 한 대내적 조건으로는 "총독부 수탈정책과 식민지 자본주의 경제구조로 인한 농촌사회의 빈궁 및 피폐화, 그리고 여성들의 생업을 찾기 위한 이농현상"을 들 수 있다. 또한 "1930년대 식민사회상황은 조선농민의 몰락과 빈궁화에 따른 무직여성의 생계부담의 증가, 그리고 일본내에서 위안부 모집의 어려움 등이 작용(하고)...전장의 확대에 따른 군대위안부 수요의 증가와 조선내에서 불황을 면치 못하는 접객업자들의 해외 진출 희망"을 들 수 있다. 신영숙·조혜란, 219-220.

위에서 살펴본 것으로부터 "군위안부의 성격은 종래의 공창 매매춘에 군이 제도적으로 개입하여 그 강제성이 더욱 농후해진데다가 식민지 여성, 그 중에서도 조선인 여성이 주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여성문제에 민족문제를 덧붙이지 않을 수 없게 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식민지하의 일본황군과 군위안부, 그것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성과 계급의 문제로서의 군위안부 성격에다가, 또한 기본적으로 식민지하의 민족 및 국가문제 등의 복합적인 성격이 부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군군주의로 일관되는 일본의 천황제 국가와 여성의 관계는 가족제도와 공창제를 통하여 가부장적 권력구조를 강화시키며, 성의 상품화 속에 인신매매, 강간과 매음 등이 성폭력의 구조와 체계로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강선미, 山下英愛)" 신영숙·조혜란, 227.

3 (4) 일본군의 위안소의 설치와 위안소 운영에 대한 통제

이른바 '위안소'는 "군자료로는 '군위안소', '군인클럽', '군인오락', 혹은 '후방시설' 등으로, 증인자료로는 중국 한구에서 '한구특수위'라고 위안소 입구에 간판이 있었던 경우를 위치해서 '공동변소', '공중변소' 또는 '賣春宿', '빠야' 등으로 불리워졌다. 이처럼 다양하게 명명된 위안소는 당시 일본군이 어느 시기, 어떤 지역에 그리고 어떻게 존재했느냐에 따라 그 규모나 형태 또한 다양하였다." 신영숙·조혜란, 244.

(위안소의 유형) "일본군이 가는 곳마다 가위 필수적으로 설치된 '위안소'는 대개 세 가지 형태가 있었다고 생각되고 있다. 그 하나는 일본군이 직접 경영한 위안소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군의 감독과 통제 아래 있는 군인과 군속 전용의 위안소이며, 또 다른 하나는 군대가 민간의 매춘시설을 일정한 기간 군대용으로 지정하여 이용하는 위안소였다." 吉見, 27-28; 강만길, 27-28.3)

3) 맥두걸보고서, 부록, para. 8은 일본정부와 비정부단체의 예비조사에 근거하여 (1) 일본군부의 직접적인 관리와 통제를 받는 곳, (2) 형식상으로 민간업자가 관리하지만 사실상 군부의 통제아래에 있고 군인과 민간고용자가 전적으로 이용하는 곳, 그리고 (3) 군에 우선권이 주어졌으나 일본시민도 이용할 수 있는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곳, 3가지 범주의 '위안소'를 언급하고 두 번째 범주의 '위안소'가 가장 일반적인 것이라고 한다. The First Report on the Issue of Japan's Military "Comfort Women", Centre for Research and Documentation on Japan's

"1990년 6월 이후 일제 군위안부는 민간업자가 제정하여
 여러 다문화로 있었고 일본군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논리의 반박을 되풀이"

(시미, 51)

3차 4차

일본정부는 1993년 8월 4일 일본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의 성명에서
 "당시 일본군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위안소의 설치 및 운영과 '위안부'의 이동에 관여
 하였다"("the then Japanese military was directly or indirectly involved i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comfort stations and the transfer of 'comfort
 women'")고 인정한 바 있다. 内閣官房 内閣外政審議室, 「 이른바 從軍慰安婦問題에 대하
 여」, 1993.8.4; UN Doc. E/CN.4/1996/137(영어본?) 그럼에도 일본정부는 일본군부가
 이러한 행위에 관여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였지만 일본은 모든 법적 책임
 을 끈질기게 부정하였다.⁴⁾

위안소의 설치에 대한 일본의 관여는 다음의 예에서 잘 알 수 있다.

①

1938년에 중국 지역 일본영사관끼리 주고받은 한 문서는 "육해군에 전속하
 는 주보(酒保) 및 위안소는 육해군이 직접 경영·감독·취체(取締)한다"하여 군에서
 직접 경영한 위안소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昭和13年7月5日附上海總領事發信在南京
 總領事宛通報要旨」, 吉見, 182쪽; 강만길, 28. 또한 "위안소는 소관 경비대장 및 헌
 병대의 감독하에 경비지구 내 장교 이하를 위해 개업했다"(第21軍司令部, 「戰時旬報
 (後方關係)」(1939), 吉見, 213쪽)거나 "작전지구의 위안소는 군에 의해 개설되었고 또
 감독되었다"("南西太平洋地域ATIS尋問報告", 吉見, 477쪽), "좌기(左記)장교(항공지구
 사령관)가 위안소 감독의 임무를 맡고 제98비행장대대가 그 운영에 대해 책임을 진
 다"("日本軍隊における生活利便施設(ATIS尋問報告 第120號)", 吉見, 522쪽)고 한 기
 록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육해군이 직접 경영하는 위안소의 존재는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위안소 건물의 건축과 시설 문제 등도 군인들이 직접 담당하였고⁵⁾ 이
 러한 군대 직영의 위안소에서 나오는 수익은 군이 차지하였다("日本軍隊における生
 活利便施設(ATIS尋問報告)", (1943), 吉見, 475쪽).⁶⁾

2차 3차
 2차 3차

War Responsibility, 31 March 1994, pp. 3-4. 신영숙·조혜란은 시기와 목적에 따라 (1) "군
 이 입안, 군대 안에 설치하여 관리, 통제뿐 아니라 직영하는 군직영(직할)위안소 (2) 군이 관
 리, 통제는 하되 민간업자에게 영업을 맡기고 군인 외 일반인 사용을 금지시키는 군속 전용위
 안소 (3) 일반인 사용의 민간업소를 군이 지정, 군이용을 위탁, 편의를 제공하는 위안소"로 구
 분한다.

4) Ibid., pp. 5-16과 E/CN.4/1996/137, annex. Report of the 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83rd session, 1996, report III (Part 4A), paras. 103-107, 114도 참조.

5) "마쓰오(松尾) 일동병 위안소 설치 사역병(使役兵)으로 7시 대대본부에 갔다가 18시 이상
 없이 귀대함". 眞志喜警備中隊, 「陳中日誌」(1944.11~12), 吉見, 394쪽. "하시모토(橋元) 오
 장(伍長) 이하 87명은 위안소 건축부지 정비에 종사함. 부지의 적토(積土) 및 매립 부지로
 도로 100미터 보수". 琴乘洞 編·解説, 『戰場日誌』에서 보는 從軍慰安婦極秘資料集, 綠陰
 書房, 1992, 270쪽. 모두 강만길, 28 재인용.

6) "...육해군 전용위안소는 그 시기별, 지역별, 민족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을 것" 신영숙·조혜
 란, 228.

↑
 1차 2차 3차 4차

32년 해군 위안소 설치

사건

이러한 육해군전용위안소로는 "1938년 상해 楊家宅이 병참사령부의 경영으로 개설된 최초의 육군 직영 대규모 위안소로 알려져 있다. 군직영위안소의 경우 군대 안에 위안소가 있고 소유주 군대에 이용자는 당연히 군인이며, 잡역을 해주는 민간인은 있었으나, 경영 주체가 군으로 민간의 개입이 있을 수가 없다. 이 경우 위안부에 대한 돈 또는 군표 지불 또는 거래를 위한 군관리담당자가 있고, 동원과정에서는 민간인의 개입도 가능하겠지만 원칙적으로 군인이 강제로 납치, 차에 태웠다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고 하겠다." 신영숙·조혜란, 232.

② 두 번째 유형의 위안소에 관하여 민간업자에게 운영을 맡겼다고 하여도 실제로는 군에서 직접 운영한 경우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군의 감독과 통제가 행사되었다.

"우선 위안소의 설치 장소나 건물등에 대해서는 물론, 종업원과 '위안부'의 인적 변동상황에 대해서도 일일이 그 지역 병참 담임장교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었고, (吉見, 499) 위안소 경영자가 경영 곤란을 당한 경우 역시 그 지역 병참 담임장교가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었으며, 그 업자는 군 당국에 대해 손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吉見, 498) 강만길, 28. 이런 경우 위안소 이용자는 물론 군인과 군속에 한정되어 있었다. (吉見, 500)

"일반적으로 1938년 봄부터 두번째 유형인 군감독하의 민영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중국 전역에 광범위하게 설치된 군위안소는 대체로 부대 가까운 곳에 군전용위안소를 설치하여 민간인 경영자로 주인을 두고 군이 관리, 통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다. 무한의 직경리, 동산리 위안소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중국의 한구 등의 부대 밖 가까운 곳의 군속전용 위안소지구에는 경비병이 언제나 배치되어 있었으며, 군전용 위안소에는 위안소 이용 규정과 함께 업자와 위안부에 관한 규정이 반드시 있었다. 또한 이런 경우 육군전용과 해군전용으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어느 경우든 위안소가 일정 구역에 밀집해있고,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그 입구에는 군인 보초가 교대로 지키며 출입자와 위안부를 통제한 것이다." 신영숙·조혜란, 232이하.

"1941년 태평양전 개시 이후 육군 중장이 각 전지의 군위안소 설치에 직접 관여, 지도, 통제한 사실은 분명했다. 그 한 예로 인도네시아(네덜란드령 동인도)에서는 현지 여성을 강제 징집하고자 육군성이 계획한 사실 등이 이미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또한 '여자에국봉사대'로 기꺼이 국가에 봉사하도록 지원케 하기도 하였다는 입장도 적지 않다." 신영숙·조혜란, 232이하. } 334 출문

위안소가 "민간업자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에도 당시 일본군부는 그 개설에 대해 허가를 내주고, 시설을 차려주고, 운영시간과 이용요금을 정하며, 시설의 사용에 있어

신영숙

해군 위안소

민간업자에 의해 운영되는 위안소

사건

정리: 신영숙·조혜란

신영숙·조혜란 연구, 1993.

서의 주의사항과 같은 문제에 관한 위안소규칙을 작성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위안소의 설치와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맥두걸보고서 재인용)하였고 이에 대한 군의 통제가 인정된다.

③ “세 번째 유형의 위안소는 원칙적으로 민간인 업소에 군인의 출입을 통제하고는 있었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으며, 때문에 군은 민간인이 주체가 되는 유곽에 군의 이용을 지정하고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었다. 거기에는 물론 ‘00위안소’라는 이름은 붙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이것도 처음에는 일반 유곽이지만 군 이용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이차피 민간인 출입통제가 따르게 됨으로써 두번째 군전용위안소로 전환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신영숙·조혜란, 232이하.

“한편 위안소의 소유 주체와 경영 주체를 분리해서 검토하는 작업은 위안소를 중심으로 군, 정부, 업자, 위안부간의 돈 또는 군표가 어떻게 오고 갔는지를 연관지어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요구된다. 군속전용형에서 군표와 돈은 위안부의 손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경영주에게 갔다가 다시 주인이 군의 지시에 따라 5:5 또는 6:4로 위안부들에게 지급한 예가 그것이다. 즉 가장 일반적인 둘째 유형에서 군이 적극개입하면 위안부에게 6할, 경영주가 4할을 갖도록 하였는데, 역으로 4:6, 또는 5:5로 분배된 경우도 있고 아예 돈이 오고가지 않았다고도 한다. 그러나 군직영의 경우는 거의 돈은 구경도 못했다고 하는 점으로 보아 바로 군에서 군으로 오고간 것임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첫번째 유형에서는 군대내에 위안소를 둬으로써 별도의 간판이 필요 없었을 것이며, 군인들에게 군표를 팔면 그 돈은 다시 군의 수입으로 잡을 수 있으나, 군위안부에게 돈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 큰 차이였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신영숙·조혜란, 232이하.

“결국 군전용 위안소가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서, 부대 근처에 00위안소 간판을 내걸고 군인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군속을 포함, 민간인의 출입도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 또한 군 직영위안소도 직접 군이 운영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인을 내세우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오히려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전용 민간인 위안소로 대체될 수밖에 없었다. 즉 군위안소를 병참시설의 하나로 중시하고 兵站課 안에 慰安係를 두어 그들이 민간인 주인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위안부와 위안소, 군인에 대한 관리, 통제를 상호 협조하였던 것이다. 게다가 군위안부들의 뇌리 속에는 군인의 인상이 너무나 짙게 각인됨으로써 그들에 의한 1, 2 유형의 확실한 구별은 어렵다. 대부분의 군위안부 출신 여성들은 위안소는 당연히 군대의 것으로, 그러면서도 민간인 주인에 대한 인상은 뚜렷하게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바로 군이 적극 개입, 통제, 관리하는 군정용 민간위안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영숙·조혜란, 232이하.

7 디로?

(5) 위안소의 설치 시기와 장소

“몇몇 문서가 1932년 소위 상하이사변이 발생했을 때 그곳에 주둔한 군대를 위해 위안소가 설치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위안소는 그때쯤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존속했다고 여겨진다. 그 시설의 규모와 지리적 범위는 나중에 전쟁이 번저감에 따라 확대되었다”(맥두걸 보고서, 부록, para. 9; UN Doc. E/CN.4/1996/137, pp. 14-15)

“전쟁이 끝날 무렵 ‘위안부’로서 ‘포로’가 된 여성들을 심문한 미국 군인이 ‘위안부’라는 용어는 일본군 특유의 것이다. 전투가 필요한 곳에는 어디든지 위안부가 있었음을 말해주는 보고가 있다’고 한 것” 강만길, 19: 美國戰時情報局 心理作戰班, 「日本人捕虜尋問報告」第49號(1944), 吉見, 441쪽.

“이느 일본군 의사과장(醫事課長)의 말에 의하면 1943년 1월 현재 일본군 장교 이하의 위안시설이 북부 중국에 100개소, 중부 중국에 140개소, 남부 중국에 40개소, 남방이라 부른 동남아시아에 100개소, 남해(?)에 10개소, 사할린에 10개소등 합계 400개소가 있다고 했다.(金原節三, 「金原節三業務日誌摘錄」, 「課長會報」, 1942.9.3) 또 버마전선에서 포로가 된 어느 일본 군인의증언에 의하면 일본군 1개 사단에는 5개소 내지 6개소의 위안소가 있었고 여기에는 일본인 및 조선인 ‘위안부’가 있었다고 했다. 「日本軍隊における生活利便施設(ATIS調査報告 第120號)」(1945.11), 吉見, 527쪽.” 강만길, 20.

(6) 위안소의 구체적 형태와 규모

“위안소의 형태는 군부대가 신축했거나 또는 원주민 가옥을 개축한 경우들, 또는 부대가 이동중이거나 전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장소없이 천막, 트럭, 혹은 초소가 곧 위안소로 전용되어 사용되었다. 이 가운데 군부대가 직접 설치한 위안소의 예로써 1944년 오키나와군자료를 보면, 먼저 담당장교가 지정되고, ‘소요자제로는 건축중의 병사용 재료를 일시 전용하고 그 외에는 부관에게 연락할 것을 명한 이래 요새인 위안소’의 ‘건축부지 정비’, ‘천막 및 돛자리로써 칸막이, 취사장, 변소설비 전부 완료’ 등을 소요인원이나 노동시간과 함께 매일일지로 상세히 지시하고 있다. 개축 또한 민간인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도 군부대가 직접 작업을 하여,(吉見義明 編輯・解説, 「資料集」, pp.298~309. 신축은 1944년 5,6월 오키나와 「요새건축 근무 제6중대」, 진중일지, 개축은 같은 해 12월 「북비행장 제56비행장대대과전중신반」 진중일지이다.) 위안소 준비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군이 관리,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영숙·조혜란, 244이하.

“부대와 위안소와의 거리는 상당히 가까웠다. 피해자 29명 가운데 다섯 사람이

부대 안의 장소, 그외는 부대 바로 근처 혹은 마을과 부대에서 조금 떨어진 곳의 위안소에 있었다 한다. 따라서 각 부대들은 편의에 따라 각자의 경비지역이나 군 진지 안의 兵 宿 등, 관할 지역 안에서 설치장소를 선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신영숙·조혜란, 244 이하.

'위안소'의 규모는 "최소 5, 6명에서 많게는 수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다양했다. 중국 한구의 적경리 위안소는 1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위안소 각각의 건물이 1938년에는 30개소, 혹은 1942년 경에는 20개소 있어 그 구역 전체가 위안소로 사용되는 경우였는가 하면, 민가를 개조한 오키나와에는 6,7명의 위안부가 있거나, 또는 2,30명을 수용 가능한 군막사가 마련된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의 경험으로는 그들이 현지에도 착하기 전후로 별도의 군막사 건물이 설치되는 경우도 두 사례 있고, 현지 가옥 즉 민가나 여관, 유곽 등 방이 많은 집이나, 또는 원래의 일반 남성용 위안소를 군위안소로 용도를 바꿔 사용한 경우들이 있다. 이외에도 군은 주둔지 촌장에게 설치를 요구하기도 했다.(센다가코오, 위의 책, p.111.)" 신영숙·조혜란, 244이하.

"군막사용으로 신축된 경우의 방은 널빤지로 칸을 막은 5, 6개의 좁은 방으로 되어 있으며, 문은 담요 등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군이 접수한 현지가옥들은 베니어판 등으로 개량되어, 방의 크기가 약 2인치 4정도, 다다미 네 장 반, 혹은 두 장 반, 한 장 반 정도, 또는 두 사람이 겨우 누울 정도의 크기로 개조되었다." 신영숙·조혜란, 244이하.

"위안소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나 건물에는 그 표시를 해놓았으며, 문에는 요금액이 붙어 있고 위안소 계산대 뒤에는 '위안부'의 이름과 사진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신영숙·조혜란, 244이하.

"위안소는 장교용, 일반병사와 하사관용으로 구분되었고, 이외에도 해군위안소가 설치된 라바울에서는 사관용, 하사관용, 병사용, 상급관리용(군속), 판임관(군속)용, 노무자용 등의 6개소로 분리되어 있었다. 또는 육군위안소와 해군위안소가 별도로 있기도 했거나, 해군이 수시로 드나드는 지역에서는 육군위안소에서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또한 군부대에 전속 위안부가 없이 이동중일 때는 부근 군위안소에서, 또는 다른 이동부대와 순회중인 위안부들에게서 '위안'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표 1>의 사례 가운데 조선 즉 우리나라 부산 '영도 제1위안소'에서 생활했던 경우도 있음에 반해 일정부자료에는 조선내 위안부 내지 위안소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신영숙·조혜란, 244이하. 조선여성은 사병용이고, 일본여성은 장교용이었다는 전 일본군의 증언도 있으나, 실제로 조선인 피해자들 대다수가 장교, 병사할 것 없이 상대를 해야 했다. 신영숙·조혜란, 248-9.

(7) 위안부의 규모

“각 위안소별 위안부의 전체 규모는... 현재로써는 ‘작은 트럭 한 대에 수명의 위안부를 태워 이동하는 규모에서부터 기지에 주거하며 많은 위안부들과 영업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했고, 특히 조선인 여성이 많았다’ 정도의 추측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1942년 9월 3일자 육군성 중앙 파장회보에는 중앙의 직접 지도로 ‘장교 이하 위안시설 북중국 100개소, 중중국 140개소, 남중국 40개소, 남방 100개소, 南海 10개소, 樺太 10개소 설치’하여 당시 육군중앙이 위안소에 직접 관계했고, 또한 같은 해 1942년 육군성 경리국 건축과에서는 해외 파견군에 총 32,103,700개의 삿쿠를 보낸 사실이 있다. 이 삿쿠의 수를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한구위안소의 나가사와(長澤健一)軍醫, 야마다(山田清吉) 위안계장의 숫자까지도 파악할 정도로 군의 위안부 관리가 세밀했다는 증언에 미루어 어느 정도는 군이 위안부의 숫자를 알고 있었으리라 추정된다.” 신영숙·조혜란, 248-9

“또한 군문서에는, 1938년 상해육군위안소 ‘작부’ 300명, 1939년 북중국 후방관계의 1000명 1938~9년 사할린의 조선인 ‘위안부’ 300명, 1942년 인도네시아에 조선인 위안업자관계 약 50명 정도(吉見義明 編輯・解説, 위의 책, p.286), 1942년의 세레베스의 이용부녀 223명, 1942년 미얀마의 조선인 ‘위안부’ 703명수송이나, 1943년 마닐라에는 5,6개 위안소가 있고 각 10여 명씩의 위안부가, 그리고 1943년 라바울에는 3개 위안소와 각 10여 명의 위안부(이상은 吉見義明 編輯・解説, 위의 책, 「자료집」 p.183,p201,p.288.)등의 기록이 있어, 특히 중일전쟁기 이후 군의 수요가 급증하며 위안부의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신영숙·조혜란, 248-9

“[증언집의 29명 중 6명이 대다수의 조선인 속에 중국인, 일본인 위안부가 있었거나 또는 근처에 일본인 위안소가 있었음을 말하고, 그외에는 모두 조선인 여성과 같이 있었다고 한다.또한 같이 있던 위안부숫자는 시기에 상관 없이 군의 규모에 따라 그다소가 결정되고 있다. 조선인 여성들은 일본군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있었다고 하는데, 증언집의 29사례의 분포지역을 보면 <표 1>에서 보듯, 만주 4명, 중국남양군도 2명, 남아시아 5명, 대만 2명, 일본 2명, 그리고 조선1명이 있다. 특히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증언자료에 현재삼아 있는 9사례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신영숙·조혜란, 248-9.

(8) 위안소의 이용과 관리

(가) 사용자와 관리자

"군문서에 '사용자'로, 또는 피해자들이 '손님'으로 부른 군위안소를 이용한 남성들은 군인남성이 원칙이었다. 피해자들의 경험으로는 오직 군인만을 상대한 사람도 있는 반면, 군속, 또는 군인보다 비싼 가격으로 민간인 남성이 오는 것을 허용한 위안소도 있었다고 한다. 피해자 김학순은 이런 민간인 남성의 도움으로 위안소를 탈출한 사례이다." 신영숙·조혜란, 248-9.

"또한 위안소에는 군자료상에서 '업주'로, 또는 위안부 출신들이 '주인'으로 말하는 관리자가 있었다. 피해자들의 증언 <표2>에서 보듯, 관리자로는 민간인, 군인 등이 있었다. 이들은 사용자들의 사용료를 받거나, 또는 위안소 위생을 관리했다. 특히 이런 대가로 군에서는 민간관리자들에게 위안부가 사용자로부터 받은 소위 요금에서 일정 배당액을 책정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이익이 결국 이들이 위안소를 관리했던 주된 이유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도 별도의 취사담당자가 위안부들의 식사를 담당하는 곳도, 또는 주선업자들이 있어, 위안부들이 위안소를 오는 일을 담당할 경우도 있다. 한편으로 군은 민간관리자로 특히 군출신을 선호하였으며, 민간관리자로는 큰 규모의 위안소에는 일본인들이 그리고 소규모나 전방에는 조선인 민간관리자가 많았다고 한다. 증언집의 피해자들의 증언으로는 9사례가 군인 또는 군속이 경영했고, 그 외 21사례는 일반인 일본남녀, 혹은 조선남녀였다. 그러나 이런 민간인 관리자가 있을 수 있었던 주된 이유의 이면에는 대외적 체면과 효율적 경영을 위해서 이들을 허용한 군의 선택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했던 것 또한 사실이라 본다." 신영숙·조혜란, 248이하.

(나) 위안소 규정

"1933년 5월 만주주둔 관동군의 '藝娼技 酌婦 健康該斷 要領' 제정과 성병검사 실시를 시발로 패전 전까지의 군자료에는 위안소 규정이 각위안소를 설치한 부대별로 작성되어 있다. 이것은 별도의 규정집으로 발행되거나, 혹은 각 군의 매일회보, 진중일지 등에 게재되었다. 한편으로 이를 작성한 자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군이 규정의 주체로서, 각기 관련자에게 지시, 명령하고 있어 그 작성자가 군부대있음은 쉽게 추론해 볼 수 있다." 신영숙·조혜란, 248이하.

"규정의 내용은 후기로 올수록 치유보다 상세해지고 있고, 또는 부대마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혹은 담당장교를 명시하고 그에게 일임하는 경우들도 있다. 각 부대별 규정내용에는 어디에서건 군 상부가 의도한 위안소 설립의 목적 즉 성병대책, 군기강화, 방첩주의 등이 공통적으로 큰 차이없이 들어 있고, 위안소 이용시간, 요금, 군인·군속과 위안부, 혹은 담당 관리자의 선정과 그가 지켜야할 사항, 위안소내 위생대책 등이 실시지역, 시기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정해져 있을 뿐이다. 어느 부대에서는 이용시

Sample

간, 외출일정 등 외에 모든 규정을 인근부대의 것을 기준으로 명시해놓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각 부대별 위안소 규정은 각 부대마다 위안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해놓은 것으로써, 각 부대마다의 독립된 제량권은 상부에 의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신영숙·조혜란, 248이하.

“위안소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군인에게는 위안소의 개설을 통보하거나, 장교 이하 각 계급별 또는 소속 부대별로 위안소를 이용할 수 있는 날짜와 시간이나 이에 대한 변경내용, 요금, 혹은 위안소 내 준수사항으로서 반드시 샷쿠를 착용할 것을, 음주, 위안부 구타 등의 금지를 또는 위안부와 키스금지와 위안부를 共有개념으로 대할 것 등을 명시해놓고 있다. 이외에도 번호표 받아 순서지키고, 외출증을 휴대하며, 2인 이상 동행할 것 또는 복장은 대검 각반 등을 소지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특히 이용시간과 요금은 장교 이하 계급별로도 달랐다. 이용시간은 대개 병사는 평일 오전 9시 또는 10시경에서부터 오후 5시나 6시까지, 그 이후 9시 혹은 10시까지가 하사, 그리고 그 이후 다음날 아침까지가 장교로 되어 있다. 또는 장교의 출입구를 다르게 표시한 지역도 있는가 하면, 병사들의 위안소 출입은 허가과 더불어 담당자의 인솔외출 등이 명시되고 있다. 장교는 앞서도 말했듯 장교전용위안소가 별도로 있는 지역도 있었으나, 그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위안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불되는 요금은 일본이나 점령지의 화폐 혹은 계급별로 색깔이 다른 군표를, 또는 금액에는 세금의 포함 비포함을 명시하거나, 特別賣錢稅免稅標로 ‘위안’ 요금을 할인하는 경우도 있었다.(금액은 현재 문서로는 실시지역과 계급별 차이만이 나와 있다. 그러나 일본여성과 조선여성의 금액은 달랐음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또한 위안부에게는 성의있고 명량한 영업을 위안소 바깥의 출입금지나, 휴일을 정해주고 있다. 특히 성병예방대책은 위안부 여성 위주로 실시되어, 성교전 뒷물이나 사후 세척 등 세세한 사항을 정해주며, 또한 전담 군의와 성병검 사실시 등을 지정해주고 있다. 위안부가 군인에 의해 전염될 경우 전염자의 각 방마다 표시를 하고, 매일 회보에 그 사실을 게재하여, 군인의 접근을 금지시키고 있다. 그리고 관리자에게는 위안소의 개·보수, 위생시설완비와 청결유지, 매일 위안부별로 받은 요금을 보고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민간관리자와 위안부와 매상액 할당률을 제시해 주기도 하였다. 군부대에서는 위안부의 배식과 위안소 건물을 마련할 때 군과 경찰이 협력할 사항들을 기재하고 있다.” 신영숙·조혜란, 248이하.

(다) 감독·단속

“1938년 중일전쟁기 남경 총영사자료에 의하면 위안소의 감독·단속기관은 그 유형에 따라 각기 달랐다. 즉 육해군에 직접 전속된 위안소는 육해군이, 병참부가 지도

하는 군전용에는 군헌병대가, 또는 일반남성이 이용하는 위안소는 영사관이 이를 담당하고 있다. (吉見義明 編輯・解説, 위의「資料集」金淳鎬 역, p.182 자료 33 참조) 현재 감독·단속기관 자료가 미흡한 실정에서 이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위험하겠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위안소의 그 규정이 군의 위안소 설치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할 때, 위안소의 감독·단속 또한 지역마다 이와 유사했으리라 추론된다. 또한 군관계 출신자들에 의하면 위안소를 설치한 부대에는 위안계가 있고, 사령관의 직접 지시로 이를 책임하는 장교가 있었으며, 기타 담당 하사관과 일반병사가 있었다. 시설이용은 부관부에서, 물자보급은 경리부에서, 위생방역은 군의부, 그리고 범죄방지는 법무부에서 담당하였으며, 위안소 입구 초소에는 경비대 순찰이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피해사례에서도 관리자가 민간인이거나 군인이거나에 상관없이 전체책임은 관할 군부대가 맡고 있다." 신영숙·조혜란, 248이하.

군 제제
한글. 333
사-28

"감독·단속은 각 관계자별로 앞서의 위안소 규정들에 근거하여 행해졌다. 그러나 이용군인이 규정을 이기면, 특별한 물의 예컨대 위안소내 기물 파괴, 또는 군인의 칼질, 구타 등으로 인한 위안부의 심각한 상처나 죽음 등을 제외하고는 훈방되고 있으며, 성병에 감염된 여성은 완치될 때까지 군의로부터 관리를 받고 다시 위안부노릇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교가 성병에 감염되자 해당 위안소를 영입정지를 시킨 예도 있다. 또는 헬마헤라섬에서는 샷쿠 '돌격1번' 이 없자 장교들이 여성들과 상의하여, 샷쿠없이 실시한 사례도 있었다." 신영숙·조혜란, 248이하.

"또한 위안부의 영입조건은 군에 의해서 규제되고, 규칙은 엄격히 실시되었다고 한다. 위안부들은 위안소에 도착하는 즉시 관리자와 같이 군 위안담당계에 출두하여 사진을 붙인 신분증명서를 신원조사서와 함께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상벌, 病歴, 특징들을 추가 기재하도록 하였다. 또한 군은 민간관리자들간의 조합 결성을 지시하여, 감독·단속한 경우도 있다. 이들의 조합사무소는 별도로 설치했으며, 여기에서 위안부의 증감, 수입과 지출의 장부기재, 이용인원, 매상고 등을 파악하여 매일 군의 위안담당계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1942년 대만군 참모장은 전보타전으로 '보루네오 파견 50명 특종위안부 인원부족으로 직업에 전디지 못하는 자가 생기기 때문에 다시 증파 20명' 을 부관에게 요청하고 있어, 감독·단속의 범위가 위안소 내에만 한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신영숙·조혜란, 248이하.

일본정부는 1992년 7월 5일 일본정부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민간업자들에 의해 운영되던 시설의 경우에도 군당국은 개업 허가를 내주거나 설비를 갖추어 주거나, 영업시간 및 요금을 정하고 시설 이용에 필요한 주의사항들을 규정하는 등, 위안소의 규율을 정하는 방법으로 위안소의 설립 및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음을 인정하였다. 맥두걸보고서 제인용.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안소'의 설치, 운영하는데 관여함으로써 다수의 조선인 군위안부에 대하여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범죄, 집단학살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하다.

국경선

2. 군위안부동원(강제연행)가

남녀 불평등을

피고인들은 다수의 조선여성들을 사기, 납치, 인신매매 등과 같은 방법으로 '중군위안부'로 강제로 동원하여 '위안소'에서 뒤에 별도로 기소된 바와 같이 성폭행, 강간, 고문, 감금,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 상해, 살인 등의 범죄행위의 피해를 입게 하여 '성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국제법정의 현장 제2조 1항에 적시된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범죄, 집단학살죄를 저질렀다.

"일본군의 성적 대상이 된 여성을 처음부터 '위안부'라고만 부른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자료들에 의하면 '위안부'란 명칭 외에 기녀·추업부·매춘부·예기·창기·작부·여급·예창기 등으로 부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일반 사회에서 이미 매춘업이나 접객업에 종사하던 여성들이 이른바 '중군위안부'로 전환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일본인의 경우 이미 매춘업이나 접객업 등에 종사한 여성들이 '중군위안부'가 된 경우가 많았으나, 특히 조선 여성의 경우 그런 경험이 없는 여성이 '중군위안부'가 된 경우가 많았다. 어느 일본인 군의관의 글에 의하면, 그가 검진한 조선 여성 80명과 일본 여성 20명의 '중군위안부' 중 일본 여성은 이미 매음업에 수년간 종사한 여성들이었지만 조선 여성은 나이도 젊고 초심자가 많아서 흥미 있는 대조였으며, 조선 여성들은 중일전쟁 후 '응모(應募)' 하여 '미교육 보충(未教育補充)' 된 여성들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Inter-Ministerial Working Group on the Comfort Women Issue Republic of Korea, Military Comfort Women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Interim Report, 1999.2.7, 143쪽; 麻生徹男, 『花柳病積極的豫防法』, 1939.)" 강만길, 20-21.

"일본이 중일전쟁을 도발한 후 입안한 비밀문서 「조선민족대책(朝鮮民族對策)」에는 "조선의 청·장년을 일본 내지에 연행하여 탄광 및 군수공장 기타에 분산시켜 사역한다"는 조항과 함께 "조선의 미혼여자를 군대의 '특수요무(特殊要務)'에 충당한다"고 한 항목이 있다. (金一勉, 『天皇의 軍隊와 朝鮮人慰安婦』, 三一書房, 1989, 17쪽). 여기에서 특수요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밝혀져 있지 않지만 군인에 대한 위안행위를 뜻하는 것이라면, 조선의 경우 종래의 기생이나 색주가들

신병장?

7) "동원"이란 용어... 피해여성들이 당시 일제라는 국가에 의해서 자기의사와는 무관하게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원치않는 일을 해야 했던 그문제를 접근하는 데는 우선 사전적 의미에서의 '동원' 개념이 합당할 듯하여 채택한 것이다. 이 외에도 현재 '징집', '강제연행', '강제동원', '징발' 등등의 용어들이 같은 의미로 서로 구분없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많은 고민이 필요하리라 본다." 신영숙·조혜란 235.

이 종군위안부로 조달되기보다 거의 매음업 내지接客업 경험이 없는 미혼여자 및 '초심자'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었다." 강만길, 21.

262. "많은 경우에 군당국의 요구를 대변하는 위안소 운영자들의 부탁을 받은 사적 알선업자들이 위안부 모집에 나섰다. 전쟁이 확산되어 점차 더 많은 위안부에 대한 요구가 밀려들며 따라 이 업자들은 많은 경우에 이 여성들을 감언이설과 협박으로 자신의 의사에 거슬러 징집되도록 하였고 관헌 등이 모집에 직접 가담한 경우조차 있다"(맥두걸보고서, 부록, para. 9).

일본정부는 군위안부의 동원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하였다. 일본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은 1993년 8월 4일의 성명에서 해당 여성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징집에 군요원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을 시인한 바 있다.

그러나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관의 1996년 보고서(para. 23)가 지적하고 있듯이 위안부의 모집과정에 관해서도 역시 자료의 부족으로 진상을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특별보고관은 관계 정부에 모든 현존서류와 진상의 공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으나 여전히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para. 81?)

군위안부의 동원은 군의 직접 동원한 경우와 민간업자의 개입에 의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군이 직접 동원한 경우

263. "동원의 지휘체계... 동원 또한 군의 지휘권 아래 있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육군과 해군은 자기 다른 지휘명령계통으로 위안소를 마련하고 있다. 육군은 제1차 상해사변 이후 각 시기별 그리고 각 지역별 육군파견군이 동원지시를 내렸으며, 해군은 또한 별도의 지휘명령계통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최고 정점에는 두말할 나위 없이 천황이 자리하고 있다. 신영숙·조혜란, 239이하.

"우선 육군은 각 파견군이 천황의 명령으로 각 파견지에 출동하여 참모총장의 조인에 기초한 천황의 명령으로 작전에 종사하였다. 각 파견군에 대한 지휘권은 천황이 가지고 있으나 천황에게서 권한의 일부가 위임된 참모총장이 군대의 「작전」 관계를, 육군대신이 군정관계를 담당하였다. 신영숙·조혜란, 239이하.

264. "한편으로 조선군사령관은 일본천황에 直^{다이}禮하고, 군령관계는 참모총장의, 또한 군정관계는 육군대신의 지시를 받으며, 조선헌병대 사령관을 지휘하였다. 또한 천황이 임명한 조선총독부는 제반 정무의 실시를 통괄하는 방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산하의 경무국은 경찰사무를 통괄하였고 지방에서는 도지사가 도 경찰부를 통하여 경찰권을 행사하며, 각지의 경찰서를 지휘하였다. 신영숙·조혜란, 239이하.

“당시 식민지적 상황에서 일제의 군과 행정부가 조선 전 지역과 조선인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막강하였으며, 조선인 ‘군위안부’ 동원체계도 이와 같은 일제의 조선 총독부 산하 관조직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즉 군이 조선총독부 총무국에 의뢰하면 조선총독부는 각 도에 지시하고 각 도는 각 군에 지시, 그리고 각 군은 각 면에 지시하여, 면장 책임 아래 조직적인 동원이 행해졌으며, 조선인·위안부’ 동원은 조선총독부의 양해와, 헌병대의 직접적인 관여 없이는 거의 불가능했던 것이다.(센다 가코오, 『종군위안부』, 東京 講談社(1973), 다물출판부 역 『증언-여자정신대 8만명의 고발』, 다물출판사(1992), p.111; 金一勉, 『軍隊慰安婦實態-戰爭と人間の記録』, 東京 現代史出版會(1977), p.82.) 신영숙·조혜란, 239이하.

“또한 직접 동원자로는 군 외에도 민간인이나, 현지 경찰 등이 관여하여 피해사례에서도 군이나 군속에 의해 동원된 6명 외에, 23명은 민간인, 순사 혹은 민간인과 순사가 함께 동원해간 사례들이다. 신영숙·조혜란, 239이하.

“1941년 당시 중국 관동군의 참모 하라 겐시로(原善四郎)에 의하면, 관동군은 조선인 위안부 2만명의 동원을 계획하여 참모에게 하달하자, 참모는 조선총독부에 의뢰했고, 조선총독부에서는 조선여성 8천명을 모아주어 중국 동북에 보냈다거나 또는 요시다 세이지(吉田清治)는 1942년부터 일제패망까지 야마구치현(山口縣) 노무보국회 동원부장을 지내며 상부-縣지사의 명으로 노무보국회지부장 겸 경찰서장-의 지시로 조선인위안부를 동원했던 경험을 증언하여 군 지휘권 아래 있던 위안부 동원정책을 입증해 주고 있다.(관동군 자료는 센다가코오, 『軍隊 慰安婦 正編』 pp. 103~104, 吉見義明, 『日本の戦争責任資料センタ』, 위의 책, III장 p.2 재인용.) 그러나 이런 동원을 입증해줄 군관계자료는 현재 한 건도 남아있지 않아 일제가 폐각소지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질게 해준다. 한편으로 해군위안소가 육군위안소 이전부터 설치되었다는 사실은 확실하나 현재 그 자료가 육군의 경우보다 더 미약하고, 조사 또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사례에서는 해군위안소에 있었던 사례가 하나, 있는데...” 신영숙·조혜란, 239-241.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군인 또는 공무원의 지위에서) 일본군성노예로 많은 조선여성들을 불법적으로 동원하는데 관여한 것이 명백하다. 구체적인 행위?

(2) 민간업자에 의한 동원 (9, 24)

민간업자는 군, 또는 제외공관(영사관)이 발행한 허가서 혹은 증명서를 반드시 가지고 해당 동원지에 가야했으며, 이들은 군이 직접 선정하거나 또는 관련된 각 파견군이 해당 동원지역 군사령부에 요구하여 선발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군이 동원자에게 보내는 내용이 육군 電報기록(季刊 『戦争責任研究』, 秋季號

pp.34-35. 미국 국립 공문서관 자료로 '1945년 6월 4일 張家口에서 경성으로 군은 위안부 수입을 위안 자금, 즉 5월 1일 下記대로 귀하에게 송금'이란 자료가 있다)으로 남아 있어, 이 또한 군의 직접 개입을 보여 주고 있다." 신영숙·조혜란, 241.

또한 "군관리 아래의 군위안부 출입정책"을 살펴보면 민간업자에 의한 동원의 경우라 하더라도 일본군과 정부의 긴밀한 협조와 관여아래 군위안부의 동원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중일전쟁기 1938년 중국도항단속에 관한 군관련자료는, 당시 일반인들의 도항에는 그 단속이 매우 엄격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제복을 착용한 일본군인 군속들은 이 단속 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군대 위안소 개설자들의 중국 漢口진출시 그들을 통제하지 않으며, 만주행의 경우는 위안부들을 무기 자재 등의 군수품과 함께 도항시키고 있다. 또는 1942년 이후 아시아·태평양전쟁기 남방방면 점령지 위안부 도항에서는 '이런 종류의 도항은...여권발급을 하는 것은 불미스러운 바 군부의 증명서에 의해 군용선으로 도항시키기'(남양방면 정령지에서의 위안소 개설에 관한 건/남방방면 정령치에의 위안부 동향 방식의 건. 1942년 1월 10일/1월 13일 吉見義明, 같은 책, pp.156~158.)를 명시하고 있다." 신영숙·조혜란, 237-8

"이외에도 1938년 한구위안소에서는 상해, 남경 등에서 양자강 도항시 위안부를 수송순위 1위인 군수품으로 우선 수송했다는 군관계자의 증언이 있고, 피해자들 또한 자신들이 군수품과 함께 도항했던 사실들을 증언하고 있다." 신영숙·조혜란, 237-8

피해자의 증언을 종합하면 군위안부의 직접 동원자로는 "증언집의 피해사례에서는 군복을 입은 남자라는 사례를 포함하여 군인·군속에 의한 동원이 6사례, 민간인에 의한 경우 23사례, 그리고 한 사례는 일인 순사와 민간인이 같이 와서 동원된 경우"가 발견된다. 신영숙·조혜란, 241 이하.

80년대 (3) 동원과정의 범죄행위 ⇒ "농제"를 이용하는 형태로. 무력으로.

군위안부로 동원된 조선여성들은 궁극적으로 성노예에 빠지게 됨으로써 입은 피해말고도 동원과정에서 취업사기, 인신매매, (친자매매), 유괴·납치, 강간, 성폭행, 감금(?) 등의 범죄의 대상이 되었다.

(가) 취업사기

증언에 따르면 "실제 <표 1>의 피해자 29명을 보면 우선 취업사기가 20명으로 가장 많고, 그밖에도 '공부할 수 있다', '정신대 안가도 된다'등의 사기가 각기 1명씩"이

있다. 신영숙·조혜란, 241 이하.

또한 “위문단 모집의 한 명의 사례로 그 위문의 내용이 ‘야전병원에서 군인들 옷빨아주고, 부상당한 군인치료하며 위문해주는’ 일인 줄 알고 간 경우로써 이 사례 또한 사기 유형의 한 예이다. 이외에도 1942년 미얀마의 조선인 ‘위안부’는 ‘부상병 위문하고 붕대감고 장병들을 즐겁게 해주는 일’로 알고 왔던 사람, (또는 친자매가 함께 온 경우도 있다). 1944년 오키나와에는 남편 사후 돈을 벌기 위해 아이를 부모에게 맡기고 온 기혼여성도 있었다고 한다.” 신영숙·조혜란, 241 이하.

“전도금(前渡金)을 받고 버마전선으로 끌려간 여성들은 그래도 군대 관계 ‘서비스’라는 말을 미리 들은 경우이지만, 일본 제국주의의 ‘종군위안부’ 동원방법은 이 밖에도 더 기만적이고 강제적인 경우가 많았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1992년에 조사한 ‘위안부’출신 19명의 증언에 의하면 그 중 12명이 “일본 공장에서 일할 여자들을 모집하러 온 사람에게”, “취직을 시켜준다는 사람이 있으니 일본으로 같이 가자고 해서”, “오사카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서”, “방직공장에 취직시켜준다고 해서”, “일본의 군수공장에 3년 계약으로 일을 하러 가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돈도 벌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겠다고 해서”, “밥도 많이 먹을 거고, 너희 집도 잘살게 해준다고 해서”, “일본에 있는 비단 짜는 공장에 간다고 해서”, “빨래해주고 잔심부름하면 봉급을 많이 주겠다고 해서”, “돈 많이 벌고 잘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구경하는 데 간다기에”, “일본에 가서 1년 동안만 공장에서 일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가에”, “일본에 가서 일하면 돈도 벌고 정신대에도 안 나간다기에” 따라갔다가 결국 ‘종군위안부’가 되고 말았다고 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신대연구회 편,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강만길, 24-25.

“증언 청취에 응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식민 지배의 결과로 빚어진 농촌 지역의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던 소녀들을 공장 여공으로 취직시켜준다고 속여 유인한 경우이며, 나머지는 강제로 납치되었거나 근로정신대로 소집되어 갔다가 굶주림을 못 이겨 도망했으나 결국 잡혀서 ‘종군위안부’가 된 경우였다.(강덕경의 경우) 그렇기 때문에 “가보니 일본인 여자 두 명과 조선인 여자 스무 명쯤이 더 있어, 의령에서부터 같이갔던 30명과 합쳐 여자가 모두 50명 정도가 되었다. 일본인 여자들은 유곽에 있다가 온 사람들이라고 했다. 나이가 27~28세 정도로 조선 여자보다 대개 열 삼쯤 많았다. 군인들은 일본 여자보다 한국 여자들이 깨끗하다고 더 좋아했다’(위의 책, 50쪽)한 것과 같이 조선인 ‘종군위안부’는 모두 매춘부 출신이 아닌 일반 처녀들이었다.” 강만길, 25.

또한 간호부로 취업시켜준다고 속여 군위안부로 동원한 사례도 있다. “중일전쟁이 격렬해지면서 조선인 간호부들이 중국전선에 투입되기 시작했다. 1939년에 이미 24명의 일본직십자 조선본부 소속 간호부가 소집을 받아 북부중국의 전선으로 나간 사실을

3기2리

7421532

보도한 신문기사가 있었고, 태평양전쟁이 고비를 맞게 되었을 때도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의 젊은 여성들을 백의천사(白衣天使)라는 미명으로 전쟁노동력으로 동원했다. 1943년의 한 신문기사는 조선 여성들도 출선하여 백의천사가 될 것이 요망되고있는 이때 육군조병창(陸軍造兵廠)에서는 이들 간호부양성소 생도를 널리 모집케 되어 이 봄에 새로 학교를 나오는 젊은 여성들로서는 성직에 나가는 다시 없는 기회를 주게 되었다. 육군조병창 간호부양성소의 생도 모집규정에 의하면 그 자격은 만 15세로부터 16세까지-고등 여학교를 졸업했거나 또는 국민학교 고등과를 졸업한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에 한정되어 있다"고 했다. 이 동원계획은 곧 시행되어 조선 처녀들이 구호간호부(救護看護婦)로 선발된 기사들이 있고, 또 조선 처녀들의 지원을 독려한 기사들이 이어졌다. 그런데 침략전쟁에 참전했던 어느 일본군 대위의 증언에 의하면 "조선인 위안부중에는 간호부의 조수를 시킨다는 말에 속았다고 한 여성이 있었다"(野留美子, 「慰安婦徵集에서의 強制性資料」, 8쪽)했고 또 어느 일본군 상등병의 증언에서는 "특수간호부 모집에 응했다가 위안부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위의 글, 12쪽)고 했다. 육군조병창의 구호간호부와 같은 특수간호부로 취업시켜준다고 속여 '중군위안부'로 동원한 경우일 것이다." 강만길, 25-26.

사려. "정신대"로 동원하여 그 일부를 군수공장에 보내고, 또 그 일부는 위안부로 보냈다는 논의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 사례에서는 이런 유형은 없으며, 다만 <표 1>의 28번 최명순같이 '정신대 안가게 해주마'라며 위안부로 데리고 간 사기 유형, 또는 근로정신대로 갔다가 그곳을 탈출하여 도피하던 중 납치되어 위안부가 돼야했던 경우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국정부에 신고한 피해자 몇 사람이 정신대로 끌려갔다가, 위안부 생활을 해야했던 사실을 증언하여 현재 한국정신대연구회에서 조사 중인 바, 그 결과가 주목된다. 신영숙-조혜란, 243.

부정적. 시문도 513
3234567. 권영도 물인.
223. 21)의 462

(나) 유괴

— 7421532의 신근 사례 () — 수사결과, →

06. 1. 15 인

"일본이 도발한 중일전쟁의 전선이 확대되고 '중군위안부'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조선에서도 대규모의 처녀유괴단이 생겨났다. 1939년의 한 신문기사에 의하면 농촌의 무지한 처녀 65명을 유인하여 창기로 팔아먹은 처녀유괴범 부부가 붙잡혔다. 이들은 경상 남북도 및 전라남북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무지하고 도회에 나가고 싶어하는 농촌 처녀들을 유괴하여 중국의 북경·천진·목단강·상해 등지에 700원부터 1,000원까지 받고 창기로 팔아먹었다. 유괴범들은 16세 정도의 소녀들을 상대로 서울 가서 좋은 직업을 알선하겠다고 속여서 팔아먹는 방법을 썼다. 조사가 계속되면서 유괴당한 처녀는 65명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각 유곽에 팔아먹은 수만 50여 명에 이르고 기타 천진·상해 방면으

— 사. 반. 후. 유. 결. 7421532에 속부

로 중국인에게 팔아먹은 경우가 20여 명 등 약 150명이나 되었으며 앞으로 취조에 따라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식민 지배 아래서 황폐될 대로 황폐된 조선 농촌에서 국내에 조달될 매음 자원과 함께 중일전쟁의 확대로 그 수요가 급증한 일본군 '위안부'의 자원이 양산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강만길, 21-22.

이 유괴단은 유괴한 소녀들을 일단 서울 시내의 유곽에 팔았다가 가족이나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다시 중국 등지의 위안소로 전매(轉賣)하는 방법을 썼다. 예를 들면 서울 시내의 반월루(半月樓)·유명루(遊明樓) 등 유곽에 팔려갔던 40여 명의 피해자 중 다른 곳으로 전매된 것이 판명된 경우만도 20세의 조(趙)모를 산동성 담경(沓鏡)위안소에 500원에 판 것을 비롯하여 12명이나 되었다.('악랄한 유곽업자 속속 외국으로 전매(轉賣)-이름은 밝히지 않기로 한다', 『매일신보』 1939. 3. 9) 식민지 조선에도 옮겨진 일본식 유곽이 농촌 소녀들을 유괴하다가 중일전쟁으로 중국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소의 '위안부'로 전매하는 중간연결소의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강만길, 22.

"같은 무렵 적발된 또 다른 대규모 소녀유괴사건을 보자. 서울에 사는 배명준(裨明俊)부자와 조카 등이 4년 전부터 북선(北鮮)지방 각 농촌을 돌아다니며 17~18세 소녀를 전문으로 100여 명 유인해다가 북중국 지방과 만주 등지에 팔았다. 이들은 농촌으로 다니면서 가난한 집 딸들을 부유한 집의 수양녀로 알선한다 하여 1년이상 서울에 데려다 두고 부모들을 안심시킨 후 백지위임장을 받아 중국 등지로 팔아넘기는 방법을 썼다고 한다.('순진한 농촌 처녀 100여 명 유인 매각(誘引賣喫)', 『매일신보』 1939.3.28) " 강만길, 22.

"가족 친척 등으로 구성된 유괴단은 지방조직도 가지고 있었다. 논산 지방의 경우 6명의 조직원을 두고 서울에 수양녀로 알선해준다는 미끼로 소녀들을 유인하여 먼저 폭행한 후 중국 지역으로 팔았는데 그 수가 150여 명이나 되었다. 경찰이 그들의 집을 수색했을 때도 14세에서 20세에 이르는 소녀 10명이 있었다.('회생된 처녀 150, 논산 지방서 연루자 6명 검거', 『매일신보』 1939.4.1)" 강만길, 22.

"역시 같은 무렵 부산에서도 "시골 처녀와 유부녀들을 꺾어 부산까지 데리고 와서는 부산부 호적계와 대서업, 소개소 등과 연락하여 호적등본을 위조해 가지고 만주·북중국·남양 방면에 팔아먹고 있었다는바 그 관계자들은 80여 명에 달한다"했고, 유괴범 10명을 구속했다.('관계자 80여 명의 대규모 부녀유괴단', 『매일신보』 1939.11.22)" 강만길, 23.

이러한 사례들을 통하여 "중일전쟁이 확대되면서 일본 군대가 가진 예의 '특수 현상' 때문에 이른바 '중군위안부'의 수요가 그만큼 많아졌고, 그 조달방법의 하나로 조선의 가난한 농촌 소녀들을 대규모로 유괴하여 중국 등지로 팔아넘기는 방법이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예로 든 신문기사들에 의하면 이 무렵에는 전국의 농촌을 대상

대중 · 처녀 · 계몽기하권

으로 하는 대규모 유괴조직들이 상당수 조직되어 중국 등지의 '종군위안부' 수요에 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유괴단들에 의해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된 조선 여성의 대부분은 10대 처녀들이었음도 또한 알 수 있다. ...가난한 부모들이 딸을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가난에 못 이겨 입을 털려고 수양녀 등으로 보낸 딸들이 사실은 유괴법에 의해 유곽 등의 매음굴이나 일본군 '위안부'로 팔려간 경우들인 것이다." 강만길, 22.

농촌 처녀 - 인신매매

그러나 유괴의 경우 일본관헌의 관여를 입증할 수 있는가?
강만길, 26.

피해자증언집에 따르면 "유괴 · 납치 7명, 그리고 친자매매, 위문단모집의 지원 등이 각 한 사람씩이다." 신영숙·조혜란, 242.

인신매매 행상인행령

(다) 인신매매

"'종군위안부'를 동원하는 또 다른 방법의 하나는 농촌 소녀들을 그들의 가난한 처지를 이용하여 일정한 금액을 미리 주고 사는 방법이다. 인신매매에 의한 '종군위안부' 동원방법이다. 그것도 처음부터 '종군위안부'로 동원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내세우고 매매한 경우는 거의 없었고 부상병 간호 등 다른 업무를 내세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강만길, 23.

"1942년 5월 초순 일본이 새로 정복한 동남아시아에서의 '위안 서비스'를 위하여 한인 위안부를 모집하려고 일본인 주선인(周旋人)들이 한국에 도착했다. 이 '서비스'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했고 병원에 수용된 상병(傷兵)들을 방문하는 것에 관련된 일들, 예를 들면 봉대를 감아준다는 등 군인들을 일반적으로 즐겁게 하는 일들에 관련되었다고 생각하게끔 했다. 이들 주선인이 사용한 유혹수단은 많은 돈, 가족의 부채를 없이 하는 기회, 쉬운 일, 그리고 새로운 땅 싱가포르에서의 새 생활에의 전망에 관한 것들이었다. 이러한 거짓 제시에 현혹되어 많은 여성들이 해외 모집에 응했고 기백원의 착수금을 받았다. 그 중의 몇은 '이 지구상의 가장 오래된 직업'과 관련되어 있었지만 대다수는 무지하고 교육 못 받은 여성들이었다. 이들이 날인한 계약서는 군대규칙에 구속시켰을 뿐 아니라 그들이 사전에 받은 가족의 빚을 위한 착수금의 다과에 따라서 6개월 내지 1년 동안 '업자주인'을 위하여 일하게끔 되었다. 약 800명이 이런 식으로 모집되었고 1942년 8월 20일경 일본인 '업자주인'과 같이 랑군에 상륙했다.(방선주, 231쪽)

이 자료는 대부분 매춘 경험이 없는 조선의 젊은 여성들이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한 돈을 미리 받고, 상이군인 간호 등의 감언에 속아서 버마전선에까지 끌려가, 종군위안부가 된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그들은 종군위안부가 아니라 채무에 의해 성노예의 처지에 빠졌던 것이다.” 강만길, 23-24.

“태평양전쟁 말기 버마 지방에서 포로가 되어 미국군에게 심문받은 어느 위안소 경영자의 진술에 의하면 그는 조선인 미혼여성 22명을 그 부모에게 300원내지 1,000원을 주고 사서 ‘위안부’로 만들었는데 그들의 나이는 19세에서 31세까지였다고 했다.(吉見, 458)” 강만길, 21.

(라) 강간 등 성폭력

“군인에 의한 동원에서는 강간, 윤간 등을 한 후 데리고 간 경우도 두 사례가 있어 동원과정에서부터 군은 이미 피해자들에게 성폭력을 행사하며, 그 범죄성을 드러내고 있다.” 신영숙·조혜란, 242.

피해지역: “도시보다는 농촌이 그리고 특히 경상도에서 상당히 동원되고 있다. 또한 이들이 간 지역은 일본에서부터 중국, 남방, 조선까지 두루 걸쳐 있어 일본군이 있는 곳이 어디이든 위안부로 가야했던 당시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피해 사례로 <표 1>에서는 강제나 사기 등은 시기별로 큰 편차가 없이 군은 필요에 따라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 여성을 끌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영숙·조혜란, 242

일본 정부는 1993년 관방장관의 담화를 통해 “위안부의 모집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담당했으나 그 경우도 감언·강압에 의거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았으며, 또 관헌이 직접 이에 가담한 일도 있었음이 명백해졌다.....전지(戰地)로 이송된 위안부의 출신지에 대해서는 일본을 별도로 하면 조선반도가 큰 비중을 점하고 있었으나 당시의 조선반도는 우리나라의 통치하에 있어서 그 모집·이송·관리 등도 감언·강압에 의거하는 등 전체적으로 보아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시행되었다”고 했다. 日本の戦争責任資料センター, 『慰安婦関係調査結果發表に關する内閣官房長官談話』, 『資料調査 第1次發表』, 1993; 강만길, 26-27 재인용.

[법적 평가]